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76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박용갑 · 문진석 · 박희승
정준호 · 한민수 · 소병훈
이연희 · 어기구 · 한준호
안태준 · 염태영 · 맹성규
윤종오 · 손명수 · 서삼석
최혁진 · 김영환 · 박상혁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도시철도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인 2025년 6월까지 이를 단 1칸도 납품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금 588억원에 대한 지출 증빙도 부실하게 하여 논란이 되었음.

특히, 해당 업체는 서울교통공사와 2018년 계약한 도시철도 2·3호선 전동차 196칸 계약도 납품을 지연해 353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하는 등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해당 업체가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를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112억 2,0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일부 납품한 차량에서는 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제작 논란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금급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여 서울시가 해당 업체와 395억원에 또 다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평가, 적정한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등 계약업무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계약서·설계서”를 “계약서, 설계서,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지급한 선금급(이하 “선금급”이라 한다)의 사용내역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서·설계서”를 “계약서, 설계서, 선금급의 사용내역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의 제조 및 교체를 위한 계약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선금급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계약의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금급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선금급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의 사용계획과 사용내역을 제출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금급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감독 및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가 해당 선금급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금급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급에 대해서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어 입은 손해 중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다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계약을 이행할 때에 선금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라. 계약을 이행할 때에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자

마. 최근 3년간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급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제9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계약의 원칙)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6조(계약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평가, 적정한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등 계약업무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u>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계약서·설계서</u>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16조(감독) ① ----- ----- ----- ----- ----- <u>계약서, 설계서,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지급한 선금급(이하 “선금급”이라 한다)의 사용내역서</u>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신설>

제17조(검사) ① -----

-----계약서, 설계서, 선금
급의 사용내역서-----

-----.

1.·2. (현행과 같음)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의 제조 및 교체를 위한 계약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선금급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u>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금급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선금급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의 사용계획과 사용내역을 제출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금급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감독 및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u> <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가 해당 선금급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금급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② ----- -----

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2. (생략)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급에 대해서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어 입은 손해 중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

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나.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1. ~ 8. (현행과 같음)

9.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계약을 이행할 때에 선금
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라. 계약을 이행할 때에 제30
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자

마. 최근 3년간 제30조에 따
른 지연배상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

<u>다.</u> (생략) ② ~ ⑦ (생략)	<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것 으로 인정되는 자</u> <u>바.</u> (현행 다목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